

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
(제11조제4항 관련)

1.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

가. 지하시설 :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(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

나. 문화 및 집회시설 :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

다. 판매 및 영업시설

(1) 소매시장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·할인점·전문점·백화점 및 쇼핑센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(2)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
(3)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

(4)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
(5)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
라. 의료시설

(1)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

(2)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)

마.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

(1)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

(2)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·공립 보육시설(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)

(3)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·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·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

바. 자동차 관련 시설

(1)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)

사. 그 밖의 시설

(1)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

(2)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

2. 필요 환기량

다중이용시설 구분		필요 환기량($\text{m}^3/\text{인}\cdot\text{h}$)	비고
지하시설	지하역사	25 이상	매장(상점) 기준
	지하도상가	36 이상	
문화 및 집회시설		29 이상	
판매 및 영업시설		29 이상	
의료시설		36 이상	
교육연구 및 복지시설		36 이상	
자동차 관련 시설		27 이상	
그 밖의 시설(찜질방·산후조리원)		25 이상	

비고

가.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나.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다.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)은 단위면적당 환기량($\text{m}^3/\text{m}^2\cdot\text{h}$)으로 산정한다.